의안번호	제754호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의결사항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

(심영석 의원 대표발의)

발 의 자	심영석·김태웅·문순규·최희정·김상현·이천수 박남용·정순욱·최영희·주철우·구점득·김경희 이찬호·이종화·진상락·전홍표·공창섭·김장하 백승규·김경수 의원
발의연월일	2021. 5. 28.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

의안 번호	754

발의연월일 : 2021. 5. 28.

발 의 자 : 심영석·김태웅·문순규·최희정·김상현·이천수 박남용·정순욱·최영희·주철우·구점득·김경희 이찬호·이종화·진상락·전홍표·공창섭·김장하 백승규·김경수 의원(20명)

1. 제안이유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원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홍보 및 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원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약사법」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합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3. “불용의약품”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4.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사용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

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③ 시민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정에서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약국·보건소·보건지소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
2. 불용의약품 등 수거 및 관리 사업
3.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 등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하여 안내해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수집·보관된 불용의약품 등을 정기적으로 수거·운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홍보)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및 불용의약품 등 배출에 대하여 창원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과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관계 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 약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0. 17., 2008. 2. 29., 2009. 12. 29., 2010. 1. 18., 2011. 6. 7., 2013. 3. 23., 2014. 3. 18., 2016. 12. 2., 2017. 10. 24., 2019. 8. 27.>

1. “약사(藥事)”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鑑定)·보관·수입·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藥局製劑)를 포함한다]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예외로 한다.

4.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5.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6. “한약제제(韓藥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7. “의약외품(醫藥外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8. “신약”이란 화학구조나 본질 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의약품 또는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9. “일반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가.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

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다. 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10. “전문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말한다.

11.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12. “복약지도(服藥指導)”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이나 성상(性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13. “안전용기·포장”이란 5세 미만 어린이가 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한다.

14. “위탁제조판매업”이란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의약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15. “임상시험”이란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藥動)·약력(藥力)·약리·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시험(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는 제외한다.

16. “비임상시험”이란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물질의 성질이나 안전성에 관한 각종 자료를 얻기 위하여 실험실과 같은 조건에서 동물·식물·미생물과 물리적·화학적 매체 또는 이들의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17.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이란 임상시험 중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

한 생체시험으로서 동일 주성분을 함유한 두 제제의 생체이용률이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을 말한다.

18. “희귀의약품”이란 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을 말한다.

가.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나. 적용 대상이 드문 의약품으로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

19. “국가필수의약품”이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5. 17., 2009. 6. 9., 2010. 1. 13., 2010. 7. 23., 2015. 1. 20., 2017. 1. 17.>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의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

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5. 7. 20.>

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23., 2015. 1. 20., 2017. 4. 18.>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는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19. 11. 26.>

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자의 처리실적을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에 포함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8., 2019. 11. 26.>

[제목개정 2013. 7. 16.]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7. 29., 2011. 9. 7., 2012. 9. 24., 2014. 1. 14., 2014. 12. 31., 2015. 7. 24., 2017. 10. 17.>

1.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할 것. 다만,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나. 폐기물의 발생 당시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된 경우
   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 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그

구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2.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것

3.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4. 재활용 또는 중간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5. 폐기물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및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다만,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재활용업자”라 한다)가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할 것. 다만, 화재, 중대한 사고, 노동쟁의, 방치 폐기물의 반입·보관 등 그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우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가. 폐산(廢酸)이나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중화처리한 후 적정하게 처리할 것

나. 일반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고온소각할 것

9.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와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遮水施設), 집수시설(集水施設), 침출수 유량조정조(流量調整槽),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설이나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분할 것. 다만, 침출수나 가스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나 가스의 발생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이를 처분할 수 있다.

10. 분진·소각재·오니류(汚泥類)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고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을 매립처분하는 경우에는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한 후 매립할 것

1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할 것

12. 폐산·폐알카리, 금속성 분진 또는 폐유독물질 등으로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수분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하여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지정폐기물을 연간 100톤 이상 배출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하며, 폐기물처리업자 중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할 것

가. 지정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의 유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안전 시설·장치 등을 갖출 것

나. 폐기물의 유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방제 약품·장비 등과 사고대응 매뉴얼을 비치하고 근무자가 사용방법과 대응 요령을 숙지하도록 조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9. 7.>

③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중간가공 폐기물에 적용되는 완화된 처리 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 9. 7.>

1. 중간가공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붙이거나 가지고 있지 아니할 수 있다.

2. 중간가공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완화된 기준과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9. 7.>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 9. 27.>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1.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으로 한정한다)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

치 · 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2)~3) 생략

라. 처리의 경우

1)~4) 생략

5) 폐의약품과 폐농약은 소각하여야 한다.

■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은 가연성, 불연성, 음식물류 폐기물과 재활용품 등으로 분리 · 보관 · 배출하여야 하며 해당 폐기물 별로 다음 각 호의 배출방법을 따라야 한다.

1.~5. 생략

6.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약국 또는 보건소(보건지소 등 포함)로 배출하여야 한다.

7.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법과 조례에 따라 수집 · 운반 · 처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기물의 수집 · 운반 ·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 배출 및 수거일과 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창 원 시

수신 창원시의회의장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 제정 관련 검토의견서 송부(심영석 의원)**

1. 의회사무국-3039(2021. 3. 26.)호와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 조례 제정 개요

조 례 안	부 서 검 토 의 견	발의자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	❍ 상위법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의약품 오·남용과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심영석 의원

붙임 : 1. 조례안 부서검토의견 1부.
2.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의원발의안) 1부.
3.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부서수정안) 1부.
4. 조문비교표 1부.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6. 관련법령 1부. 끝.

창 원 시 장

주무관 **강혜영** 의회협력담당 **김정미** 기획관 전결 2021. 4. 8. **김종필**

협조자

시행 기획관-4706 (2021. 4. 8.) 접수 의회사무국-3535 (2021. 4. 8.)

우 5143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기획관 (용호동) / http://www.changwon.go.kr

전화번호 055-225-2264 팩스번호 055-225-4702 / aeiou1005@korea.kr / 비공개(5)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

의원발의 조례 제정관련 검토보고

❖ 창원시의회 심영석 의원 발의 예정인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 보고

Ⅰ 조례 제정 개요

1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및 제66조(의안의 발의)

○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재정 등)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및 『약사법』 제2조

○ 『폐기물 관리법』 제2조(정의) 및 제13조(폐기물 처리기준 등)

2 조례안 개요

○ 조례안명 :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 발 의 자 : 창원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영석의원

○ 상정시기 : 제10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 제안이유 :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안전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원시민의 건강 보호 및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 조례(안)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보건의료기본법』제4조에 따른 목적 및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정의

▸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의약품 안전사용 시책개발 및 시민의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배출의 책무

▸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불용의약품 수거,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 및 사업에 관한 사항

▸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홍보 및 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Ⅱ 부서 검토내용

1 법적근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약사법』 제2조(정의)

○ 『폐기물 관리법』 제2조(정의) 및 제13조(폐기물 처리기준 등)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2 법령검토 : 저촉사항 없음

○ 『보건의료기본법』제4조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약사법』제2조의 의약품에 대한 정의와 및 『폐기물 관리법』 제2조 및 제13조에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 등에 근거를 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 없음.

3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 **조례 제2조(정의) ⇒ 일부조문 수정**

- 제2조의 2호 중 '의약품을 처방받거나'는 의료법 제17조2(처방) 및 제18조(처방의 작성과 교부)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의사의 권한이자 의무사항으로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로 조문 수정

의원발의(안)	부서 수정안
2. 〈일부조문 수정〉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처방받거나~~적절한 시기에 적합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 조례 제3조(책무) ⇒ 조문 추가

- 『폐기물 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및 환경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2017. 12. 13.)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책무 추가
- **제3호(책무)의 ②호를 ③호로 수정하고, ②호의 조문내용 추가**
- **수정된 ③호의 조문 중 일부 조문 추가**

의원발의(안)	부서 수정안
〈조문추가〉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일부 조문 추가 및 번호수정〉	③ 시민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정에서 발생된 불용의약품은** 약국·보건소·보건지소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조례 제5조(불용의약품의 관리) ⇒ 일부 조문 삭제

- 제5조 제2항은 창원시폐기물관리조례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제1항 6호에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약국 또는 보건소(보건지소 등 포함)로 배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 **중복 조문 삭제**
- 제5조 제3항의 처리부서를 구분 할 필요가 있음. 현재 가정에서 배출되는 불용의약품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 기타 의약품도매상·제조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은 사업장폐기물이나 의료폐기물 간주되어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되고 있음 ⇒ **일부 조문 삭제**

의원발의(안)	부서 수정안
② 시민은 약국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불용의약품 등을 배출할 수 있다.	**〈조문 삭제〉**
〈일부 조문 삭제〉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부서로 하여금**~~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수집·보관된 불용의약품 등을 정기적으로 수거·운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재정부담 사항

○ 창원시 일반회계 재원으로 편성

○ 예상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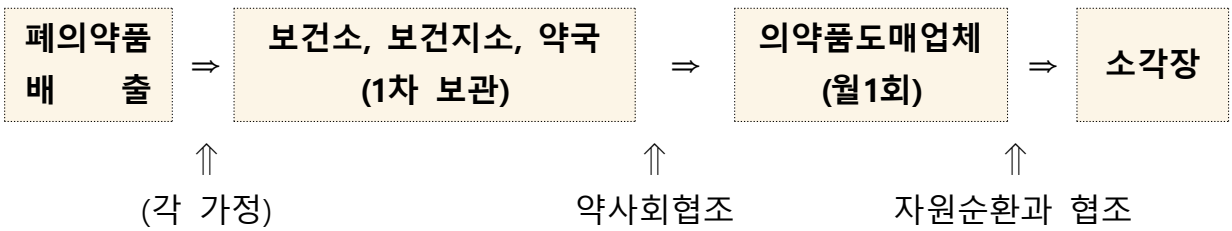
5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구 분		자 치 단 체 명
광역자치단체(11)		서울, 인천, 경기, 세종, 강원, 광주, 대구, 대전, 경남, 경북, 부산
기초 자치단체 (93)	서울(17)	강동구, 강서구, 광진구. 금천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동작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양천구, 은평구, 중구, 중랑구
	부산(3)	사하구, 서구, 해운대구
	대구(3)	남구, 달서구, 달성군
	광주(2)	동구, 북구,
	대전(3)	동구, 서구, 중구
	인천(7)	강화군, 계양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울산(1)	중구
	경기(21)	남양주시, 과천시, 의정부시, 부천시, 성남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고양시, 의왕시, 평택시, 하남시, 고양시, 군포시, 파주시, 포천시, 김포시, 가평군
	강원(4)	원주시, 횡성군, 인제군, 정선군
	충북(3)	청주시, 괴산군, 옥천군
	충남(8)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계룡시, 예산군, 청양군, 보은군, 부여군
	전북(5)	군산시, 전주시, 완주군, 무주군, 부안군
	전남(3)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경남(11)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남해군, 밀양시, 사천군, 창녕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하동군
	경북(5)	안동시, 포항시, 경주시, 청주시, 군위군

Ⅲ 종합의견

○ 소관부서 종합의견 : 조례 제정 타당함

- 본 조례는 의약품 오·남용과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불용의약품의 정의는 가정, 약국 및 제조·수입업소에서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모든 의약품을 말하는 것**으로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되어 짐.
- 또한,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환경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2017. 12. 13.)에 의거 보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며, 가정이 아닌 의약품 도매업소·제조업소 등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사업장폐기물이나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있음
- 가정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의 수거 및 처리체계



○ 상위법 저촉여부 : 해당없음

붙임 1.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1부.
2. 부서수정 조문비교표 1부.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4. 관련법령 1부. 끝.

붙임 **검토의견 송부안(부서 수정안)**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수정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1. . .
발 의 자 : 심영석 의원

1. 제안이유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원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홍보 및 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원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약사법」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합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3. “불용의약품”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4.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사용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정에서 발생된 불용의약품을** 약국·보건소·보건지소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
2. 불용의약품 등 수거 및 관리 사업
3.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 등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② (조문삭제)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부서로 하여금**~~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수집·보관된 불용의약품 등을 정기적으로 수거·운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홍보)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및 불용의약품 등 배출에 대하여 창원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과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문별 비교표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원안)	수정조례(안)
(조례명칭)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조례명칭)** 현행과 같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원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약사법」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처방받거나**~~ 적합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3. “불용의약품”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4.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사용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2조(정의)** 1. (현행과 같음)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합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원안)	수정조례(안)
제3조(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조문추가)
② 시민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 발생을 최소화하고, 약국·보건소·보건지소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정에서 발생된 불용의약품을 약국·보건소·보건지소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 2. 불용의약품 등 수거 및 관리 사업 3.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사업)** (현행과 같음)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원안)	수정조례(안)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 등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약국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불용의약품 등을 배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부서로 하여금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수집·보관된 불용의약품 등을 정기적으로 수거·운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조문삭제)**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부서로 하여금**~~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수집·보관된 불용의약품 등을 정기적으로 수거·운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홍보)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및 불용의약품 등 배출에 대하여 창원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홍보)** (현행과 같음)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원안)	수정조례(안)
제8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과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위하여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현행과 같음)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 제4조(사업)

-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사업
- 불용의약품 등 수거 및 관리사업
-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조례』 제4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 예상비용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오막엽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열린 의회"

창 원 시 의 회

수신 창원시장(기획관)

(경유)

제목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관련 검토의견 조회 송부(심영석 의원)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에 의거 해당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2021. 4. 9.(금)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협의사항 :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의 저촉 여부, 재정 부담 등

❍ 조례안 개요

조 례 안	발 의 자	상 정 시 기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	심영석 의원	제10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붙 임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 1부. 끝.

창원시의회의장

주무관 유혜리 입법지원담당 이행정 의회담당관 최진호 의회사무국장 2021. 3. 26. 곽기권

협조자 경제복지여성 전문위원 강웅기

시행 의회사무국-3039 (2021. 3. 26.) 접수

우 5143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용호동) / http://council.changwon.go.kr/

전화번호 055-225-5373 팩스번호 055-225-4743 / hyeri0815@korea.kr / 비공개(5)

붙임 **검토의견 조회안**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1. . .
발 의 자 : 심영석 의원

1. 제안이유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원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홍보 및 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원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약사법」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처방받거나 적합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3. “불용의약품”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4.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사용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 발생을 최소화하고, 약국·보건소·보건지소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
2. 불용의약품 등 수거 및 관리 사업
3.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 등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약국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불용의약품 등을 배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부서로 하여금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수집·보관된 불용의약품 등을 정기적으로 수거·운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홍보)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및 불용의약품 등 배출에 대하여 창원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과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